

##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9987호, 2024. 1. 9. 공포 및 시행)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2024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공표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1호)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변경(안 제2호)
- 다. 시행일 변경(부칙)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5조의8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816,465	4,645,565	7,462,030

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986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일반형 화물차	885,970	990,701	1,876,671
5톤 일반형 화물차	1,376,378	2,310,314	3,686,692
12톤 일반형 화물차	2,310,980	3,698,103	6,000,083
25톤 일반형 화물차	2,618,685	5,043,930	7,662,615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일반형 화물차	466
5톤 일반형 화물차	596
12톤 일반형 화물차	808
25톤 일반형 화물차	866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윈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sup>1)</sup>와 유가<sup>2)</sup>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 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1) (철강재) 2.94km/ℓ, (일반형 화물차) 1톤: 8.6km/ℓ, 5톤: 5.3km/ℓ, 12톤: 3.8km/ℓ, 25톤: 3.1km/ℓ

2) '23.12.1.~'24.2.29. 평균 1507.83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포함))